

행운요양원 이용계약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(1)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(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(3)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(4) 시설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, 이용수칙, 사고대비,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. 이용 어르신과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“계약서”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(5)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.

2. 계약기간

- (1)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(2)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1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2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 - 3)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3. 준수사항

- (1)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(2)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.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의 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해결,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